

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(제11조 관련)

구 분	심사분야	심 사 항 목	배점한도(점)
I. 기술능력 평가	1. 사업수행 계획	인근 항로와의 연계성, 선박정비계획, 대체선박의 확보 계획 및 대 여객 서비스 전략 등의 사업계획	20
	2. 재무구조 · 경영상태	신용평가등급	20
		여 객 운 송 사 업 지속기간(점)	10
		10년 이상	10
		6년 이상	8
		3년 이상	6
		3년 미만	4
	3. 신인도	고객만족도 평가결과 및 보조항로 운항 중도 포기	+3.0~△3.0
	4. 안전관리 능력	- 선원 정년제도: 65세 이하 정년 도입시 2점, 65세 초 과 또는 정년 미도입 시 1점 - 「해운법」,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선박안전법」 등의 안전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: 3점~0점 -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유 면허 등급: 2점~1점 -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등급: 2 점~0점 - 지침 제14조의2에 따른 분기별 점검 결과: 1점~△1점	10
	5. 근로조 건 이행계 획의 적 정성	- 예정가격 산정 시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협약서 제출: 10 점 - 예정가격 산정 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(최저임 금 이상이어야 한다) 이상의 임금지급 협약서 제출: 4 점 - 협약서 미제출: 0점	10
	6. 선박수리 비 집행계 획	- 예정가격 산정 시 선박수리비의 100퍼센트이상 집행 협약서 제출: 10점 - 예정가격 산정 시 선박수리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 상의 집행 협약서 제출: 5점 - 협약서 미제출: 0점	10
	7. 입찰가격 산정의 적 정성	- 산출내역의 적정성	10
	8. 재무위험	부도 또는 파산이 우려되어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(단, 법정관리·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)	△20
	소계		90
II. 입찰가격 평가		-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	10
합 계			100

① 입찰가격 평점산식

가)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cdot \text{평 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} \times \left(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해당입찰가격}} \right)$$

* 최저입찰가격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
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

* 해당입찰가격: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

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
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나)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cdot \text{평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} \times \left(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 상당가격}} \right) + \left[2 \times \left(\frac{\text{추정가격의 80\% 상당가격} - \text{해당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 80\% 상당가격} - \text{추정가격의 60\% 상당가격}} \right) \right]$$

* 최저입찰가격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

* 해당입찰가격: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%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

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다)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②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5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.

③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등급은 별표 2-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.

④ 신인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- 고객만족도 평가결과,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한다.

수상횟수	3회	2회	1회	0회
가점점수	3	2	1	0

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보조항로 운항 중도 포기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.

중도 포기횟수	3회 이상	2회	1회	0회
감점점수	3	2	1	0

⑤ 안전관리 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조항로 또는 일반항로를 운영하면서 「해운법」, 「해사안전기본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선박안전법」 등의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항선박 1척당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: 3점~0점

과징금/과태료 부과 횟수(1척당 평균)	0 회	1/2회 미만	1회 미만	1회 이상
평가점수	3	2	1	0

* 공고일 기준 보조항로 또는 일반항로 운영기간이 3년 미만인 입찰참가자는 전체 입찰참가자 평균점수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.

-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침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른 분기별 점검(4회 × 3년) 결과 보조항로 운항선박 1척당 ‘불량’ 개수: 1점~△1점

불량 개수(1척당 평균)	0 회	1회 이하	1회 초과
가점점수	1	0	△1

-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유 면허 등급이 「해운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면허 등급과 같을 경우 1점, 상위일 경우 2점

- 안전관리책임자의 선박안전관리사(「해상교통안전법」에 따른 자격)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미보유 시 0점, 3급인 경우 1점, 2급 이상인 경우 2점

⑥ 산출내역의 적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.

- 선원 인건비 산출의 적정성: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간하는 입찰 전년도 제 수당을 포함한 내항여객선원 직책별 월평균임금을 따르고 항로별 특성에 맞는 수당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2점

- 선박수리비 산출의 적정성: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1점

- 선용품비 산출의 적정성: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1점

- 유류비 산출의 적정성: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2점
- 임시용선료 산출의 적정성: 용선료의 산출근거가 과거 3년간 유사항로에서 실제로 용선한 용선료와 비교하여 적정할 경우 2점
- 수입금 산출의 적정성: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비추어 적정할 경우 2점